

2025 「한국미술 비평지원」 참여단체 공모 면접 심의 결과안내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미술 전문 매체와 비평가 연계 지원을 통한 미술비평문 생성 및 비평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 「한국미술 비평지원」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2025년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공개 모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5개의 단체가 지원하였으며, 행정심의를 통과한 5개 단체 중 면접 심의를 통해 최종 4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본 지원사업 공모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모든 단체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심의개요

- 심 의 명 : 「2025 한국미술 비평지원」 참여단체 공모 면접 심의
- 심의일정 : 2025. 2. 28.(금)
- 심의위원 : 외부 전문가 5인 (*가나다순)

연번	이름	소속 및 직책
1	김계원	성균관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2	김병수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회장
3	김영기	OCl미술관 부관장
4	손영옥	국민일보 국장
5	신보슬	토탈미술관 책임큐레이터

○ 심의기준

심의지표	가중치	세부심의 내용
목적의 부합성 및 적절성	20%	○ 사업목적(사업취지)의 이해도(10)
		○ 계획, 구성, 성과 등 공모사업 목적과의 부합성(10)
지원단체의 전문성	20%	○ 사업 수행을 위한 매체 전문성과 적절성(10)
		○ 사업 수행을 위한 내·외부 인력 배치와 활용의 적절성(10)
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차별성	40%	○ 사업계획의 합리성(10)
		○ 비평문 기획의 참신성 및 비평가 매칭의 적절성(10)
		○ 예산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10)
		○ 추진 일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10)
기대효과	20%	○ 사업 수혜자에 대한 지원 효과(10)
		○ 해당 사업성과에 대한 파급효과(10)

□ 선정결과 : 총 4개 단체 선정

연번	단체명	매체명
1	비평웹진 풍	비평웹진 풍
2	에이엠아트	아트인컬처
3	마테리알	마테리알
4	(주)월간미술	월간미술

※ 상기 번호는 e나라도움 신청 순번 순

○ 면접 심의 총평

사업 계획 수립에 있어 평론가 선정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기획의 주제가 좀 더 선명하기를 바람

○ 교부조건 : 지원사업 교부신청 전 센터와의 협의를 통하여 사업 구체화 및 예산 조정 필수 (필요 시 문체부, 예경, 심의위원간 검토 추진)

※ 센터와의 지원 사업의 구체화 및 예산 조정을 협의하지 않을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선정단체 의무사항(필독)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방지 조치(사업 운영인력 전원 해당)

-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제출(해당 양식)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및 수료증 제출

②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 및 수료증 제출

③ 모든 홍보물·인쇄물에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로고 삽입

④ 지원사업을 통해 게재된 지면 또는 웹페이지에 건별 지원 문구 기재

※ 예시) “이 기사(원고)는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 특별 기고로 게재되었습니다.”

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입에 따라 예술인(기획자 포함)과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 활동을 제공받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필수

※ 불이행시 「예술인 복지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문화예술용역'이란?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 받는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뜻하는 것으로, 고용·도급·업무위탁·파견 등 그 형태를 막론하고 모두 문화예술용역에 포함

⑥ 선정단체 대상 사전 워크숍·성과 공유회, 회계교육 참석

⑦ e나라도움 상 집행·정산·실적보고·정보공시 등 성실 이행

□ 유의사항

- 지원 신청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서 제출 시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지침을 따라야 함
- 심의기준에 의거한 선정 및 교부 확정 후 사업의 규모가 변경될 경우 지원 결정액이 축소·조정될 수 있음
- 동 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적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한 모든 책임은 지원단체에게 있음
- 비평문의 저작권 관련 논란(표절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건에 지출된 원고료 및 게재료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 부정수급 행위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 임직원 및 배우자 연관(직계존비속 포함) 업체 또는 단체와의 거래는 불가함

*제4장 보조사업 집행관리('보조금법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관련)

*제13조(보조금 사용 및 제한)

- ④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와는 거래할 수 없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보조금 등 공적 지원 선정에서 제외
 - 선정 제외 대상에는 지원단체뿐만 아니라 참여 비평가 및 작가도 포함함
- 선정 단체 대표 및 임직원과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비평가 및 작가가 친인척(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인 경우 지원 불가
- 대표 본인 및 임직원에게 비평사례비 지급 불가
- 지원신청 예산의 산출 근거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명확한 산출 근거가 없는 예산 책정은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공급가액으로 예산을 계획해야 하며 부가세는 단체에서 직접 부담해야 함
-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 시 선정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자는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사업내용 불이행시 또는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됨
 - 정산 및 실적 보고서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정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 보조금 정산시 반드시 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사 후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교부 확정 이후 사업기간 내 집행한 금액만 인정됨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준수하여 지원금을 집행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지원금) 집행은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내에서만 가능
 - 교부신청은 행사 시작일 기준 2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사전 및 사후

집행은 환수 조치됨

- ※ 지원금과 자부담 사용 혼용 금지, 타(대표 명의 포함) 통장으로 지원금 이체 금지, 지원금 현금 인출 금지, 사업 수행 후 정산 확정 전 지원금 통장 해지 금지 등
- 2천만원 초과 용역 계약 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누리장터) 이용 필수
- 미술창작대가제도 도입("22.2)에 따라 작가사례비 지급 시 참여비 및 창작 사례비를 구분하여야 함
- 공모요강,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사업운영 가이드, 의무 및 유의 사항 등 규정을 미숙지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해당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제출 후 수정 불가)

향후 일정(안)

- 선정단체 대상 사전워크숍 2025년 3~4월 중

관련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정보팀 hyme9@gokams.or.kr